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389
----------	-----

제출년월일 : '95. 5.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및 상법에 의거 민관이 공동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지역난방사업, 도시개발사업, 유통사업등을 위해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법인격 → 주식회사, 회사명칭 →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안 제2조)
- 회사 수권자본금 200억원,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1/4이상
(안 제5조)
- 주요사업→지역난방사업, 도시개발사업, 유통사업등(안 제6조)
- 안산시 주주권행사는 안산시 소유주식에 대하여 시장이 행사
(안 제7조)
- 대표이사 및 임원은 관련업무에 다년간 종사한 경험자로 함.
(안 제8조)
- 회사대표이사의 요청이나 회사운영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할 수 있음 (안 제15조)

□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 상 법
- 소요예산 : 24.5억원(경영사업투자기금 확보 — 특별회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및 "상법"에 의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지역난방사업, 무역사업, 도시개발사업, 유통사업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정관) ①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②회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자본금) ①회사의 수권자본금은 2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②안산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 1미만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사업)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난방사업
2. 부역사업
3. 도시개발사업
4. 유통사업
5.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7조 (안산시의 주주권 행사) 안산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이 행사한다.

제8조 (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 ①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관련업무에 다년간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②제1항의 임원은 "상법" 제399조에 의거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9조 (지방비의 부담) ①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사업으로서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2. 회사설립 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비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관해서는 회사의 관계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대행사업의 수행) ①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2조 (경영평가)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등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보고 및 검사등) ① 시장은 회사의 업무, 회계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고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회사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정원의 1/3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